

교직원 보수 책정 지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4조 제①항 및 연봉제 교직원 연봉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대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책정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은 전임교원 및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 이라 한다)에 한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기본급” 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본봉을 말한다.
2. “보수”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3. “수당” 이라 함은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.
4. “연봉” 이라 함은 해당 직급을 반영하여 계산한 기본급여 및 기타 각종수당을 합한 연액을 말한다.

제2장 보 수

제4조(신규채용 시 호봉획정) ①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호봉은 연봉제 또는 호봉제에 의한다.

② 호봉제 교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보수규정 및 자체봉급표에 의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.

③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으로 하나만 획정한다.

④ 연봉제는 경력, 업무의 난이도,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계약에 의한다.

제5조(보수의 책정) ① 호봉제 교직원은 매 학년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·호봉별 봉급, 보수액, 수당의 한도를 교직원 보수책정을 통하여 보수지급표에 의하여 적용하여 반영한다.

② 연봉제 적용 교원은 아래 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한다.

1. 책정기준

구분	책정기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원 (연봉제 전임교원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공분야의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능력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 산학협력중점교원, 일반 전임교원 연봉 36,000,000원 이상을 원칙 (1년차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원 (연봉제 정규직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련 업무의 경력 및 전공의 관련도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(기술자격 포함) 행정업무 수행 능력 대학 행정 및 관련 업무의 이해도 연봉 29,000,000원 이상을 원칙 (3년차)</p>

2. 책정방법

- 가. 연봉제 교직원은 개별적으로 책정기준에 의거하여 양자 간 합의로 연봉을 정한다.
 나. 외국인 전임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책정방법 및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의 책정을 위한 계약의 갱신은 매년 할 수 있으며 연봉의 조정은 매년 교직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적용한다.

제6조(기본급 및 수당) ① 호봉제 교직원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지급한다. 단 제 수당은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연봉제 교원의 보수는 기본급 외에 교원연구비, 학생지도비, 급량비,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.

③ 연봉제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외에 행정연구비, 직급보조비, 급량비,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.

제3장 보 수 지 급

제7조(보수 지급일) ① 매월 급여 지급의 계산기간은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7일에 지급한다.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지급으로 한다.

제8조(보수 지급 방법) ①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 금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.

② 호봉제 교직원은 보수책정에서 정한 교직원 보수지급표 및 교직원보수규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
제4장 보 칙

제9조(퇴직금)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